

의안번호	제 호
의 연 결 월 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

제 출 자	구미시장
제출연월일	2015년 월 일

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 동의안

의 안 번 호	
--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11. .

제 안 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6년도 세출예산의 출연 여부에 대하여 구미시의회에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2016년도 세출예산 영남대학교 출연 계획
 - 출연 예정액 : 금200,000천원
 - 출연 필요성
 -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분위기 조성
 - 출연근거법령 : 교육기본법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

3. 출연안 : 별첨

4. 입법예고 : 해당없음

5. 관련법령 :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

□ 영남대학교 향토생활관 입사생 증원

출자·출연 예 정 액	금200,000천원 ('15년 200,000천원-경북대)											
출자·출연 기 관	○ 기 관 명 : 영남대학교 ○ 대 표 : 노석균 총장 ○ 소 재 지 : 경북 경산시 대학로 280											
사 업 내 용					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○ 경제적 어려움이 있거나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향토생활관에 입주시켜 학생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학업분위기 조성 ○ 관·학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기여											
사업개요	○ 예산지원액 : 200백만원 ● 출연금 1천만원당 학생 1인 입주권 부여, 20명 입사 지원 ※ 영남대 향토생활관 기금 출연현황											
	<table><tr><td>출연액(출연년도)</td><td>'15년 접수인원</td><td>경쟁률</td><td>구미 학생수 (학부)</td></tr><tr><td>3억원 / 30명 입사 (2008.10.29)</td><td>149명</td><td>4.9 : 1</td><td>1,132명</td></tr></table>				출연액(출연년도)	'15년 접수인원	경쟁률	구미 학생수 (학부)	3억원 / 30명 입사 (2008.10.29)	149명	4.9 : 1	1,132명
	출연액(출연년도)	'15년 접수인원	경쟁률	구미 학생수 (학부)								
	3억원 / 30명 입사 (2008.10.29)	149명	4.9 : 1	1,132명								
	○ 영남대 향토생활관 현황											
	● 건물현황 : 782명 수용(17,433㎡) - 지하 1층, 지상 15층 2개동(2인 1실)											
● 건립연도 : 2009. 1. 12 (236억 투자)												
● 자치단체출연기금(2015년 11월 현재) - 총 64억(경북 23개 시·군, 달성군), 640명 입사 ※ 경산시 5억원, 영천시 5억원, 칠곡군 4억원, 기타 시 3억원												
<table><tr><td>수용가능 인원</td><td>자치단체 추천인원</td><td>추가수용 인원</td></tr><tr><td>782명</td><td>640명</td><td>142명</td></tr></table>				수용가능 인원	자치단체 추천인원	추가수용 인원	782명	640명	142명			
수용가능 인원	자치단체 추천인원	추가수용 인원										
782명	640명	142명										
근거·법령	○ 교육기본법 제27조 (보건 및 복지의 증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 복지 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											
검토의견	○ 원룸거주 학생에 비교 생활비 절감으로 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○ 지역을 선도한 유능한 인재양성을 도모하며 ○ 학생, 학부모의 대학생활 불안감 해소 및 학업에 전념토록 기여하므로 향토생활관 지원이 타당함											
소관부서	○ 총무과장 : 조 석 희 (480-6750)											

관 계 법 령

○ 교육기본법 제27조(보건 및 복지의 증진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학생복지주택의 건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실시하여야 한다.

소관 실·과		총 무 과
입 안 자	담 당 관	조 석 희
	담 당	김 덕 중
	담 당 자	시 병 연 (480-6782)